

## 특허기술의 권리회복심사 방법 연구

설인환<sup>1</sup>, 지선구<sup>2\*</sup>

<sup>1</sup>국립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sup>2</sup>국립금오공과대학교 IT융합학과

### A Study on the Decision Method of Re-establishment of Patent Technology

In Hwan SUL<sup>1</sup>, Seonkoo CH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Material Design and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up>2</sup>Department of IT Convergence,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특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도록 권리회복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특허권 획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법 상 권리회복에 관한 심사 프로세스와 심사 방법을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새롭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신규 권리회복심사 방법으로서 먼저, 기간 해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건의 예측 가능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다음으로 기간 도과를 유발한 사건을 명확히 한 후 사건의 성격에 따라 사건 전 조치의 합당성, 사건 후 조치의 합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제안한다. 조치의 합당성을 판단할 때는 사건의 유형을 고려한다. 사건의 유형을 천재지변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인위적인 과실이 있었던 경우 및 기타 시스템 불량이나 사고 등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및 그 수준이 적정했는지를 판단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엄격한 권리회복요건 하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절차들에 대해 다시 절차를 밝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좀 더 쉽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Abstract** As we become part of the global economy, patent disputes are increasing rapidly.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acquisition of patent rights by improving the decision method for the re-establishment of patents so that Korean companies can enter the global markets and compete. In this study, the decision process of re-establishment under the Patent Act was newly presented by referring to the guideline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and Europe. As a new decision methodology, this study first judges whether the event that directly caused the delay was predictable and then proposes a procedure to review the validity of pre-case and post-case measure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event. When determining the validity of measures, this study considers the type of events, which were classified into inevitable cases such as natural disasters, artificial negligence, and other unexpected events, such as system defects or accidents. It is designed to determine whether necessary measures were taken and whether the response level was appropriate for the event type. As a result, patent procedures that were not acceptable under the current strict re-establishment requirements will be re-processed,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Korean companies can acquire patent rights more easily.

**Keywords** : Patent, Re-establishment, Predictability, Pre-measure, Due Care

본 연구는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로 지원되었음(2021).

\*Corresponding Author : Seonkoo CHEE(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email: lingerchee@kumoh.ac.kr

Received April 28, 2022

Revised June 13, 2022

Accepted July 7, 2022

Published July 31, 2022

## 1. 서론

경제의 글로벌화가 특허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고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특허 분쟁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위주로 특허소송이 발생하다가 최근에는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까지 국제적인 특허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1].

특허소송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자면 특허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기업들의 특허권 확보 노력 또한 두드러진다. 기술개발 결과물을 특허출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전에는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순응해 쉽게 포기하던 특허기술에 대해서도 경쟁자가 출현하는 등 경영 전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특허권 권리회복(patent re-establishment)을 요청하고 있다[2].

권리회복이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의도하지 않게 기간을 넘겨 대응하지 못해 특허권 등이 소멸한 경우 그 절차나 권리 등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3]. 특허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포기 간주되거나,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취하 간주되는 경우에 있어 권리회복 신청이 대표적이다. 권리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멸된 특허출원 절차는 계속 상태로 전환되며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권리회복제도는 우리나라 특허법이 제정된 1946년 당시부터 있었지만 그리 활발히 이용되지는 않았다. 출원인 등의 낮은 인식 때문이기도 했으나, 가장 주요한 원인은 특허권의 권리회복에 대한 허용 요건(이하, “권리회복요건”이라 한다)이 엄격하고 권리회복 판단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상 권리회복요건은 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소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다[4].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를 다해도 피할 수 없는 사유로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를 말한다고 한다[5]. 권리회복요건의 판단에 있어 일반인이란 어떤 자를 상정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보통의 주의가 어느 수준의 주의를 말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4].

권리회복 절차에 관해서도 살펴보면,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출원인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권리회복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5]. 권리회복 신청에 관한 서류만 1~2종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서류의 기재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권리회복요건을 입

증하기 위한 기재 방법 등에 관한 안내도 부족하다. 특히, 본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특허청이 어떤 심사 방법을 통해 권리회복신청을 심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심사 방법의 불명확성은 출원인 등이 당해 권리회복신청의 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해 우리 기업이 특허기술을 온전하게 권리회복으로 인정받기 위한 범용화된 심사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권리회복 절차를 정리한 후, 미국이나 일본, 유럽 특허청 등 주요 선진국의 권리회복 절차를 비교·분석해 범용화된 명확한 권리회복 심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종전 권리회복심사 방법 분석

### 2.1 우리나라 권리회복심사 방법

우리나라의 권리회복심사 방법은 특허법이나 그 하위 법령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 본 연구에서는 특허청이 관리하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기초해 정리하였다[5]. 권리회복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의 담당 공무원은 먼저, 권리회복신청 서식에 기재된 사항 및 첨부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당해 기간의 해태가 출원인 등이 소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확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보통의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무효처분의 서류를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송달한 경우는 권리회복요건을 만족하나,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5].

한편, 특허청의 「등록업무편람」에도 유사한 규정을 찾을 수 있는데, 권리회복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사회통념 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있다[6]. 다만, 여기서도 사회통념의 정의나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아 심사상 모호한 측면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권리회복심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는데, 권리회복과 관련한 판례가 참고될 수 있다. 단순히 특허청으로부터 권리소멸 예고장을 받지 못했거나 대리인의 착오로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권리회복을 인정받지 못한 반면[7], 심한 빈혈과 의식장애 등으로 특허료 납부기간을 도과한 특허권자가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8].

## 2.2 주요 선진국의 권리회복심사 방법

### 2.2.1 미국의 권리회복심사 방법

미국의 특허기술 권리회복심사 방법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불명확한 측면이 있지만, 권리회복요건 자체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완화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사 방법이 중요하게 취급되지는 않는다[9]. 미국 특허청의 권리회복요건은 기간 도과가 “비의도적(unintentional)”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이다. 출원인 등이 비의도적이었다고 진술서(statement)만 제출하면 특별한 심사 없이 권리회복을 인정하고 있다[10]. 이에 따라, 출원인 등이 미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드물며, 심지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권리회복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e-petition」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정도이다[11].

### 2.2.2 일본의 권리회복심사 방법

일본 특허청은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가입을 위해 2011년 대대적으로 권리회복 관련 특허법 규정을 개정하고 「기간도과 후의 구제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12].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은 권리회복에 관해 (1) 예측 가능성, (2) 사건 전 상응조치 여부 및 (3) 사건 후 상응조치 여부의 3가지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한다[12]. 여기서 상응조치란 조치를 강구해야 할 자가 취했어야 할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말한다.

먼저, 기간 도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 예측 가능한 경우, 이미 사건의 발생 시기와 영향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기간이 해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상응조치 여부나 수준과 관계 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사건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라면 권리회복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출원인 등이 취한 조치와 조치를 강구해야 할 자 관점에서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본 특허청은 출원인 등이 취하여야 할 상응조치로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그 사건과 연관해 사건을 회피하기 위한 일상적인 방안을 강구했을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 절차를 관리하는 기간 관리 시스템(patent application management system)에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여 기한이 잘못 고지되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평소 관리자를 두어 입력 상황을 이중으로 체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인위적 실수를 방지

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권리회복은 인정되지 않는다[12].

일본 특허청에서는 기간 해태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후의 상응조치도 중요하게 취급한다. 출원인 등은 해당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일본 특허청에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상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예측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다는 점, 일단 상응조치를 취할 자를 설정한 후 그 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 등에서 일본 특허청의 권리회복심사 관행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 2.2.3 유럽 특허청의 권리회복심사 방법

유럽 특허청의 경우, 우리나라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권리회복요건에 비해 일견 완화된 “모든 상당한 주의(all due care)”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13]. 이는 일본 특허청의 “정당한 이유” 요건과 엄격성에서는 유사한데, 심사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14].

먼저, 유럽 특허청은 미국과 유사하게 특별한 심사 없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속행(further processing)”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다. 유럽 특허청에 대한 단순한 행위 즉, 공지예외주장 서류의 제출이나 출원료 납부 등 제3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차들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 없이 권리회복 신청을 받아들여 즉시 계속 상태로 전환해준다. 또한, 별개 제도로서 상당한 엄격성을 갖는 “권리 재설정(re-establishment)” 제도가 있는데, 심판청구기간이나 번역문 제출기간 등 비교적 중대한 행위에 관한 절차에 관해 적용된다[14]. 본 연구는 권리회복심사 방법의 개선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는바, 유럽 특허청의 권리 재설정 제도상 심사 방법만을 정리하기로 한다.

유럽 특허청은 권리회복요건인 “모든 상당한 주의(all due care)”를 기울였는지 심사함에 있어 (1)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인지 여부 및 (2) 정상적으로 만족스럽게 작동하는 관리 시스템(인적 시스템 포함)에서의 단독의 실수(isolated error)에 의한 기간 지연(delay)인지를 판단한다. 또한, 모든 상당한 주의란 처한 상황(circumstances)에서 합리적으로 유능한(competent) 출원인, 대리인 등이 채용했을 법한 표준적인(standard) 주의 정도로 상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외적인 상황은 케이스별로 각각의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갑작스러운 조직 개편이나 돌발적으로 발생한 심각한

한 질병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출원인 등은 그런 상황의 발생에 대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 즉, 조직 개편을 주의 깊게 준비했다거나 평소 대체 직원을 두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조치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모든 상당한 주의 의무는 맨 먼저 사건 당사자인 출원인 등에게 부과되고 다음으로 위임을 통해 선임된 변리사 등 대리인에게 부과된다[14]. 출원인 등은 대리인에게 기간 준수에 대해 신뢰 관계 하에서 의존할 수 있으나, 출원인과 대리인 간의 통상적인 업무 협력은 최소한 유지할 것으로 요구한다. 예를 들어, 전문 자격을 가진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출원절차 등을 진행했다면 면책이 가능하나, 비전문가에게 출원절차를 의뢰해서 기간이 해태됐거나 변리사 사무소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종합하면, 유럽 특허청의 권리회복심사 방법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간관리시스템에서 발생한 일회성의 단독 실수에 의한 것인지 심사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3. 권리회복심사 방법 개선 방안

#### 3.1 권리회복 신청 프로세스 개선 방안

먼저, 우리나라의 권리회복요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점에서 특허법 개정을 통해 요건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된다[4]. 권리회복요건이 너무 엄격해 단순한 실수에 의한 권리 소멸에 대해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받지 못하면 국제 특허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다음으로 권리회복 신청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기간경과 구제신청서”에 기간경과 이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며, 권리회복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간이 경과되어 제출된 서류로 취급해 반려 처분한다[5,6]. 이에 반해 일본 특허청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태된 절차를 다시 밟는 동시에 “회복이유서”를 첨부하게 되며, 권리회복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 처분한다.

권리회복이란 기간 해태에 따라 밟을 수 없게 된 절차를 원래대로 되돌려 계속 상태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실

질적으로 일본의 프로세스 즉, 원래의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회복이유서”를 첨부하는 방식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이에 따라 원래의 절차에 관한 서류를 각하 처분함으로써 행정적 하자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경과 구제신청서와 절차에 관한 서류를 같이 접수받으면서 권리회복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기간경과 구제신청서까지 반려 처분하고 있다. 정당하게 제출된 기간경과 구제신청서까지 반려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특허법 제51조의 보정각하 및 심판절차에서의 각하를 제외하고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절차에서 각하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서류의 제출에 관해서는 반려 처분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이 “기간경과 구제신청서”를 절차 관련 서류와 같이 제출받되,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권리회복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신청서 반려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권리회복 신청 및 심사 절차는 종전의 특허청 행정 관행을 반영하여 Fig. 1과 같이 설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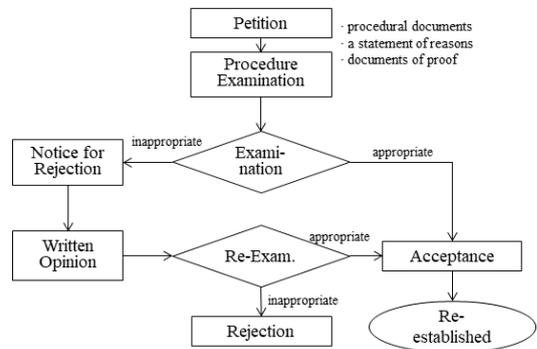


Fig. 1. Proposed re-establishment examination process of the present study

#### 3.2 권리회복심사 방법 개선 방안

주요 선진국의 정형화된 권리회복심사 방법을 우리나라의 심사 방법과 비교해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미국은 권리회복요건이 매우 완화된 상태에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므로 우리나라와 수준이 유사한 일본 및 유럽 특허청의 권리회복심사 방법을 비교하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고려 요소(consideration)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가 없는 반면, 일본과 유럽 특허청은 공히 우선적으로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혹은 예외적인 상황

Table 1. Comparisons of re-establishment decision method

Country	Requirement of re-establishment	1st Consideration	2nd Consideration
Korea	reasons for indemnification	ordinary care	-
USA	unintentional	-	-
Japan	due care	predictability	corresponding measures
Europe	all due c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isolated mistake on a normally working system

(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차적 고려 요인으로 일본은 상응하는 조치를 관계자가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유럽 특허청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에서의 일회성 실수가 발생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업이 특허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변리사 사무소도 규모가 작아 별도의 정교한 특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므로 시스템상의 일회성 실수를 고려하는 유럽 방식의 권리회복심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일본과 같이 증명서류를 기반으로 상응조치(corresponding measure)가 선제적으로 취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간편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허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개선 방안을 적용함에 문제 발생이 적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Fig. 2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권리회복심사 방법을 도시한다. 본 연구의 권리회복심사 방법은 주요 선진국의 경향을 반영하여 (1) 예측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즉시 권리회복을 불인정하고, (2)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출원인 등이 사건 전 및 사건 후에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필요한 조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사건의 유형을 고려한다. 사건의 유형을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2)인위적인 과실이 있었던 경우 및 (3)기타 시스템 불량이나 사고 등 예기치 않은 사건이 있었던 경우로 구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및 그 수준이 적정했는지를 판단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권리회복심사 방법에 따르면 기간 도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충실히 기간 해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면 종전과는 달리 권리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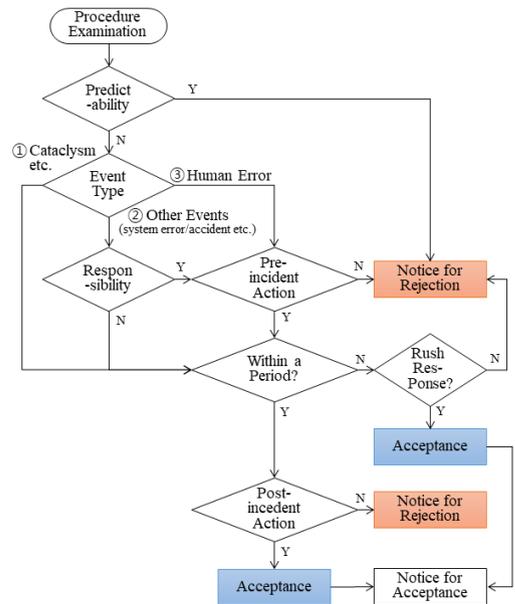


Fig. 2. Present re-establishment decision method

들어, 변리사 사무소에서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특허출원을 평온하게 관리하던 중에 예측하지 못한 시스템 오류로 특정 출원의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당해 대리인은 그 사실을 입증해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

그 외 대리인이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춘 보조자를 두어 기간을 관리하다가 그 보조자의 실수로 기간이 도과한 경우 종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심사 방법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특허법상 권리회복에 관한 심사 프로세스 및 방법을 주요 선진국의 심사 관행을 참고해 새롭게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권리회복요건을 설정해 특허기술의 권리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심사 방법도 비교적 명확하였다. 미국이나 유럽 특허청은 심사 없이 즉시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유럽 특허청의 경우 예측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사건 전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으로 권리회복을 심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신규 권리회복심사 방법으로서 (1)사건 예

측 가능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2) 기간 도과를 유발할 사건을 구분한 후 사건의 성격에 따라 사건 전 조치의 합당성, 사건 후 조치의 합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제안한다. 이에 따라 종전 엄격한 권리회복요건 하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절차들에 대해 다시 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좀 더 쉽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종전에 미흡했던 특허기술의 권리회복심사 방법을 새롭게 단계별로 제시하는바, 실무적으로 특허청의 심사 업무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원인 등 민원인 입장에서 심사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권리회복심사 결과가 사건의 예측 가능성, 조치의 합당성 등 쟁점별로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심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다툰 때도 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외국 법제와 우리나라 심사 관행을 비교 분석해 차이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로서 향후 연속되는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측 가능성과 조치의 합당성 판단만으로 기간 해태의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후속되어야 하며 특히, 사건의 유형별 사례 연구가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References

- [1] K.D. Ryu, "Behind the scenes of semiconductor M&A market: patents", TV Chosun, 2021.3.8., Available From: <http://it.chosun.com/> (accessed Apr. 26, 2022)
- [2] Korea Intellectual Patent Office Complaint, "A conversation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Patent Office", Available From: <https://www.kipo.go.kr/> (accessed Apr. 26, 2022)
- [3] The Patent Act, Article 16, 17, 67-3, 18-3,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 (accessed Apr. 26, 2022)
- [4] S. K. Chee, Y. J. Lee, J. Y. 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atent re-establishment system",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Vol. 16, No. 3, pp. 109-148, Sep. 2021. DOI: <https://doi.org/10.34122/jip.2021.16.3.109>
- [5] Patent Examination Guidelines, Korea Intellectual Patent Office, Available From: <http://www.kipo.go.kr> (accessed Apr. 26, 2022)
- [6] Registration Work Manual, Korea Intellectual Patent Office, Available From: <http://www.kipo.go.kr> (accessed Apr. 26, 2022)
- [7] Seoul Administrative Court Judgment 2006GuHap19976,

Nov. 22, 2006.

- [8] Daejeon High Court Judgment 2005Nu331, Sep. 15, 2005.
- [9] USA Patent Act 35 U.S.C. 27.
- [10]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711.03(c),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vailable From: <https://mpep.uspto.gov/> (accessed Apr. 26, 2022)
- [11] The ePetition Application Sit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vailable From: <https://www.uspto.gov/patents/apply> (accessed Apr. 26, 2022)
- [12] Examination Guidelines for Re-establishment, Japan Patent Office, Available From: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 (accessed Apr. 26, 2022)
- [13]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122(1), European Patent Office, Available From: <https://www.epo.org/> (accessed Apr. 26, 2022)
- [14] S. Chee, Y.J. Lee, J.Y. 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cquisition Procedure and Recovery System, Policy Report, Korea Intellectual Patent Office, Korea, 2020.

### 설 인 환(In Hwan SUL)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 재료공학부 (공학박사)
- 2006년 3월 ~ 2009년 10월 : iFashion의류기술센터 연구원
- 2009년 10월 ~ 2013년 8월 : 특허청 특허심사관
- 2013년 9월 ~ 현재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산업재산권, 기술사업화, 지식재산교육

### 지 선 구(Seonkoo CHEE)

[정회원]



- 1998년 2월 :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공학박사)
- 1998년 3월 ~ 2003년 6월 : (주)삼성전자 책임연구원
- 2003년 7월 ~ 2014년 2월 : 특허청 특허심사관(변리사)
- 2015년 2월 ~ 현재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IT융합학과 교수

<관심분야>

산업재산권, 기술사업화, 산업재산 정책, 기술창업